

◆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-272호

**천호·성내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(천호4구역)
(경미한)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**

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357호(2006. 10.19.)로 천호·성내재정비촉진지구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-482호(2008.12.26.)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된 이후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-468호(2009.11.26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-45호(2011. 2.10.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-92호(2011. 4.14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-139호(2012. 5.31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-350호(2013.10.17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-400호(2015.12.17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-257호(2016. 8.25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32호(2017. 2. 2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268호(2017. 7.20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314호(2017. 8.31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-390호(2018.12. 6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-124호(2020. 3.26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-509호(2020.12. 3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-462호(2021. 8.26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-611호(2021.11. 4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-455호(2022.11. 24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-7호(2023. 1. 5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-302호(2024. 6.20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-38호(2025. 1.16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-113호(2025. 3. 6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-552호(2025.10. 2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-216호(2026. 4. 23.)로 변경 결정 고시된 천호·성내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하여 「도시재정비 촉진에 관한 특별법」 제12조 제1항 및 제3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변경 결정 고시합니다.
2. 천호·성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과 관련하여 「도시재정비 촉진에 관한 특별법」 제13조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·고시하며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,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.

2026년 5월 21일

서울특별시장

가. 천호·성내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·유형·위치 및 지정목적(변경없음)

명칭	유형	위치	면적 (㎡)			지정 목적
			기정	증감	변경	
천호·성내 재정비촉진지구	중심지형	강동구 천호동 453번지 일대	275,519.9	-	275,519.9	•도시정비체계 및 기반시설 재정비로 지역 중심의 개발여건을 마련하고 상업·업무·문화기능 등의 복합시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시환경의 적극적인 개선을 도모하고자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

나.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, 목표연도(변경없음)

- 기준년도 : 2006년
- 목표연도 : 2031년

다.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(변경)

1.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(변경)

구 분		면 적 (㎡)			구성비 (%)	비고
		기 정	증 감	변 경		
합 계		275,519.9	-	275,519.9	100.0	-
업무	소 계	45,529.8	-	45,529.8	16.5	-
	일반업무	17,335.1	-	17,335.1	6.3	-
	업무복합	28,194.7	-	28,194.7	10.2	-
상업	소 계	130,362.8	증) 4.1	130,366.9	47.3	-
	판 매	15,451.1	-	15,451.1	5.6	-
	일반상업	50,604.5	증) 4.1	50,608.6	18.4	-
	근린상업	24,168.8	-	24,168.8	8.8	-
	주상복합	40,138.4	-	40,138.4	14.6	-
주 거		36,923.1	-	36,923.1	13.4	-
계획 기반 시설	소 계	62,704.2	감) 4.1	62,700.1	22.8	-
	공 원	2,333.1	-	2,333.1	0.8	-
	공공공지	222.6	-	222.6	0.1	-
	도 로	59,668.2	감) 4.1	59,664.1	21.7	-
	경 로 당	171.3	-	171.3	0.1	-
	사회복지시설	309.0	-	309.0	0.1	-

－ 변경사유서

구 분	변 경 내 용	변 경 사 유
변경	• 면적변경 - 일반상업 : 50,604.5㎡→50,608.6㎡(증 4.1㎡) - 도로 : 59,668.2㎡→59,664.1㎡(감 4.1㎡)	• 소로 2-4 면적 감소로 인한 촉진지구내 토지이용계획 변경

2. 인구·주택 수용계획(변경없음)

구 분		기존세대수 (세대)	계획세대수(세대)				인구수 (인)	
			소 계	일반분양	임대주택	기존세대		
합 계		기정	2,851	3,976	1,349	408	2,219	9,943
재정비 촉진구역	천호4	기정	360	670	499	171	-	1,675
	천호8	기정	196	520	363	157	-	1,300
	소 계	기정	556	1,190	862	328	-	2,975
존치관리구역		기정	2,295	2,786	487	80	2,219	6,968

3. 기반시설 설치계획(변경)

구 분		면 적(㎡)			비 고
		기 정	증 감	변 경	
합계		66,084.35	감) 4.1	66,080.25	-
도로		59,668.20	감) 4.1	59,664.10	-
공원·광장·공공공지·녹지		2,555.7	-	2,555.7	-
공공시설 등	사회복지시설	1,665.92	-	1,665.92	(대지지분+건축물)기부채납
	공공청사	1,277.40	-	1,277.40	(대지지분+건축물)기부채납
	공공임대주택	917.13	-	917.13	대지지분: 기부채납 / 건물: 표준건축비 매입(서울시)

※ 공공시설(공공청사) 연면적 5,665.2㎡ 설치 및 조성(기부채납)

※ 공공시설(공공청사)은 「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(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, 2020.)」의 공사비와 「기부채납 공공시설 설치비용 검증 가이드라인(2021. 7. 5.) 기준 적용

※ 천호8구역 공공시설(사회복지시설) 및 공공임대주택

- 「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(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, 2024.)」의 공사비 기준 변경 적용(노인복지센터, 신축) 및 「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·관리운영기준 및 매뉴얼(서울특별시, 2025. 1.)」의 대지지분 산정방식 적용

- 변경사유서

구 분	변 경 내 용	변 경 사 유
변경	- 면적변경 - 합계 : 66,084.35㎡→66,080.25㎡(감 4.1㎡) - 도로 : 59,668.20㎡→59,664.10㎡(감 4.1㎡)	소로 2-4 면적 감소로 인한 촉진지구내 기반시설 설치계획 변경

4. 공원·녹지 및 환경보존계획(변경없음)

5. 교통계획(변경없음)

6. 경관계획(변경없음)

7. 도시·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(변경)

지구명	구역명	구분	위치	면적(㎡)	정비수법	비고
천호 성내 재정비 촉진 지구	천호4촉진구역	기정	천호동 410-100번지 일대	17,484.4	전면개발	-
		변경	천호동 410-100번지 일대	17,480.3	전면개발	-
	천호8촉진구역	기정	천호동 166-4번지 일대	7,613.0	전면개발	-

- 변경사유서

구분	변경내용	변경사유
변경	천호4촉진구역 면적 변경 - 17,484.4㎡ → 17,480.3㎡ (감 4.1㎡)	소로 2-4내 현황건축물 침범으로 인한 구역제척

8. 재정비촉진구역의 지정에 관한 계획(변경)

가) 재정비촉진구역(변경)

구분		사업구역면적(㎡)	용도지역	필지수(개)	건물수(개)	비고
계	기정	25,097.4	-	64	35	-
	변경	25,093.3	-	64	35	-
천호4촉진구역	기정	17,484.4	일반상업	23	10	-
	변경	17,480.3	일반상업	23	10	-
천호8촉진구역	기정	7,613.0	일반상업	41	25	-

- 변경사유서

구분	변경내용	변경사유
변경	천호4촉진구역 면적 변경 - 17,484.4㎡ → 17,480.3㎡ (감 4.1㎡)	소로2-4 현황건축물 침범으로 인한 제척으로 구역면적 감소

나) 존치구역(변경)

구분		사업구역면적(㎡)	용도지역	필지수(개)	건물수(개)	비고
존치관리구역	기정	204,108.9	일반상업, 근린상업, 준주거, 제3종일반주거	743	475	-
	변경	204,113.0	일반상업, 근린상업, 준주거, 제3종일반주거	743	475	-
합 계	기정	204,108.9	-	743	475	-
	변경	204,113.0	-	743	475	-

- 변경사유서

구분	변경내용	변경사유
변경	존치관리구역 면적 변경 - 204,108.9㎡ → 204,113.0㎡ (증 4.1㎡)	천호4촉진구역 구역면적 감소로 인한 존치관리구역 면적 증가

9. 용도지역 변경계획(변경없음)

10. 용도지구 변경계획(변경없음)

11. 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·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(변경없음)

가) 건축물의 용도 및 건폐율 계획(변경없음)

나) 건축물의 용적률 계획(변경)

구분	구역명		면적(㎡)	획지면적(㎡)	용적률		비고
					기준(%)	최대(%)	
촉진구역	천호4	기정	17,484.4	13,756.7	591	798	-
		변경	17,480.3	13,756.7	591	797	-
	천호8	기정	7,613.0	6,305.0	520	800	-

- 변경사유서

구분	변경내용	변경사유
변경	천호4촉진구역 면적 변경 - 17,484.4㎡ → 17,480.3㎡ (감 4.1㎡)	- 소로2~4 현황건축물 침범으로 인한 제적으로 구역면적 감소 - 기반시설 면적 감소로 인한 용적률 감소

12. 기반시설 비용분담계획(변경)

가) 재정비촉진구역별 기반시설 순부담률 산정(변경)

구분			면적 (㎡)	획지 면적 (㎡)	기반시설(㎡)					국공유지(㎡)		순부담 면적 (㎡)	순 부담률 (%)	비고
					계	도로	공 원 광 장 공공공 공지 녹 지	공공시설 (대지지분 +건축물)	공공 임대 주택	계획 기반 시설 내	기존 기반 시설 내			
민간투자사업	천호4 촉진	기정	17,484.4	13,756.7	3,727.7	2,593.7	1,134.0	-	-	19.3	-	3,708.4	21.2	
		변경	17,480.3	13,756.7	2,723.6	2,589.6	1,134.0	-	-	19.3	-	3,704.3	21.2	
	천호8 촉진	기정	7,613.0	6,305.0	3,891.1	1,308.0		1,665.9	917.1	355.0	447.0	3,089.1	40.6	
		변경	7,613.0	6,305.0	3,891.1	1,308.0		1,665.9	917.1	355.0	447.0	3,089.1	40.6	
	계	기정	25,097.4	20,061.7	7,618.8	3,901.7	1,134.0	1,665.9	917.1	374.3	447.0	6,797.5	27.1	존치관리 구역제외
		변경	25,093.3	20,061.7	7,614.7	3,897.6	1,134.0	1,665.9	917.1	374.3	447.0	6,793.4	27.1	
국공유지사업	존치관리	기정	204,108.9	196,247.6	4,009.5	4,009.5	-	-	-	-	-	-	-	존치관리 구역 통합 (국공유지 제외)
		변경	204,113.0	196,251.7	4,009.5	4,009.5	-	-	-	-	-	-	-	
	구역 외	기정	2,843.0	-	2,843.0	2,843.0	-	-	-	-	-	-	-	
		변경	2,843.0	-	2,843.0	2,843.0	-	-	-	-	-	-	-	
	계	기정	206,951.9	196,247.6	6,852.5	6,852.5	-	-	-	-	-	-	-	
		변경	206,956.0	196,251.7	6,852.5	6,852.5	-	-	-	-	-	-	-	

※ 천호8구역 공공시설(사회복지시설) 및 공공임대주택 설치 및 조성(기부채납)

- 「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(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, 2024.)」의 공사비 기준 변경 적용(노인복지센터, 신축) 및 「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관리운영기준 및 매뉴얼(서울특별시, 2025. 1.)」의 대지지분 산정방식 적용

※ 공공부문 기반시설 면적은 존치지역 내 기반시설 중 확보가 필요한 면적(사유지)

- 변경사유서

구분	변경내용	변경사유
변경	- 천호4재정비촉진구역 사업면적 및 도로면적 변경 - 사업면적 : 17,484.4㎡ → 17,480.3㎡ (감 4.1㎡) - 도로 : 2,593.7㎡ → 2,589.6㎡, (감 4.1㎡) - 존치관리구역 획지면적 변경 204,108.9㎡ → 204,113.0㎡ (증 4.1㎡)	- 소로 2-4내 현황건축물 침범으로 인한 제척으로 천호4촉진구역 사업면적 및 도로면적 감소 - 천호4촉진구역 구역면적 감소로 인한 존치관리구역 획지면적 증가

나) 기반시설의 민간투자 사업에 관한 계획(변경없음)

13. 임대주택 건설 등 세입자 등의 주거대책(변경없음)

14. 단계적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(변경없음)

15. 재정비촉진구역별 정비계획(변경)

가) 천호4재정비촉진구역(변경)

1) 재정비촉진구역 결정조서(변경)

구 분	정비사업 명칭	위 치	면 적(㎡)			비 고
			기 정	증 감	변 경	
변 경	천호4 재정비촉진구역	천호동 410-100번지 일대	17,484.4	감) 4.1	17,480.3	

- 변경사유서

구 분	변 경 내 용	변 경 사 유
변경	• 구역면적 변경 17,484.4㎡ → 17,480.3㎡ (감 4.1㎡)	• 소로2-4 현황건축물 침범으로 인한 제척으로 구역 면적 감소

2) 토지이용계획(변경)

구 분		면 적(㎡)			비 율 (%)	비 고
		기 정	증 감	변 경		
합 계		17,484.4	감) 4.1	17,480.3	100.0	
택 지 (획 지)	소 계	13,756.7	-	13,756.7	78.7	
	획 지	13,756.7	-	13,756.7	78.7	
정비기반 시설 등	소 계	3,727.7	감) 4.1	3,723.6	21.3	
	도 로	2,593.7	감) 4.1	2,589.6	14.8	
	공 원	1,134.0	-	1,134.0	6.5	

- 변경사유서

구 분	변 경 내 용	변 경 사 유
변경	• 토지이용계획 변경 - 도로: 2,593.7㎡ → 2,589.6㎡, (감 4.1㎡)	• 소로2-4내 현황건축물 침범으로 인한 도로면적 감소

3) 용도지역·지구 결정조서(변경)

○ 용도지역(변경)

구 분	면 적(㎡)			비 율 (%)	비 고
	기 정	증(감)	변 경		
합 계	17,484.4	감) 4.1	17,480.3	100.0	
일반상업지역	17,484.4	감) 4.1	17,480.3	100.0	

- 변경사유서

구 분	변 경 내 용	변 경 사 유
변경	구역면적 변경 17,484.4㎡ → 17,480.3㎡ (감 4.1㎡)	소로2-4 현황건축물 침범으로 인한 제척으로 구역면적 감소

○ 용도지구(해당없음)

4)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(변경없음)

○ 도로(변경없음)

5)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(변경없음)

6) 건축물의 정비·개량 및 건축시설계획(변경)

○ 기존건축물의 정비·개량계획(변경)

구 분	구역구분		가구 또는 획지구분		위 치	정비개량계획(동)					비 고
	명 칭	면적(㎡)	명 칭	면적(㎡)		계	존치	개수	철거후신 축	철거 이주	
기정	천호4 재정비 촉진구역	17,484.4	-	13,756.7	천호동 410-100 번지 일대	10	-	-	10	-	-
변경	천호4 재정비 촉진구역	17,480.3	-	13,756.7	천호동 410-100 번지 일대	10	-	-	10	-	-

- 변경사유서

구 분	변 경 내 용	변 경 사 유
변경	구역면적 변경 17,484.4㎡ → 17,480.3㎡ (감 4.1㎡)	소로2-4내 현황건축물 침범으로 인한 구역 면적 감소

○ 용적률 계획(변경)

- 기준용적률(변경없음)

용도지역	획지면적(㎡)	용적률 적용기준(%)	비 고
일반상업지역	13,756.7	800	서울시 도시계획조례

- 상한용적률(변경)

구 분	산 정 내 용		비 고
개발가능(상한) 용적률 산정	기정	●기준용적률 : 591% ●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율 이내 + $[1.3 \times (\text{기반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} \times \text{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한 부지의 용적률}) / \text{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}]$이내 ●개발가능용적률 : $591\% + [1.3 \times 3,708.4\text{㎡} \times 591\%] / 13,756.7\text{㎡} = 798.1\%$ ●상한용적률 = 798%이하	서울시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조례8조 1항1호
	변경	●기준용적률 : 591% ●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율 이내 + $[1.3 \times (\text{기반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} \times \text{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한 부지의 용적률}) / \text{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}]$이내 ●개발가능용적률 : $591\% + [1.3 \times 3,704.3\text{㎡} \times 591\%] / 13,756.7\text{㎡} = 797.9\%$ ●상한용적률 = 797%이하	

- 변경사유서

구 분	위 치	변 경 내 용	변 경 사 유
-	천호동 410-100번지 일대	● 용적률 변경 - 798%이하 → 797%이하 (감1%)	● 소로2-4내 현황건축물 침범에 의한 구역면적 및 기반시설 면적 감소로 용적률 감소

○ 건축시설계획(변경)

결정구분	구역구분		가구 또는 획지 구분		위 치	주된 용도	건폐율 (%)	용적률 (%)	높이 (m)
	명칭	면적 (㎡)	명칭	면적 (㎡)					
기정	천호4 재정비촉진구역	17,484.4	-	13,756.7	천호동 410-100 번지 일대	주거, 근린생활시설	60이하	798이하	120 이하
변경	천호4 재정비촉진구역	17,480.3	-	13,756.7	천호동 410-100 번지 일대	주거, 근린생활시설	60이하	797이하	120 이하

건축물 용도별 면면적	기정	• 주거 : 65,354.80㎡(59.28%) • 업무(오피스텔) : 10,742.62㎡(9.74%) • 업무(오피스) 및 상업 : 34,149.64㎡(30.98%) ※ 준공공임대(7.5%), 장기전세주택(2.5%)도입 : 오피스텔포함 주거비율 70%이하 ※ 용적률 798%이하 범위내에서 건축계획 가능 ※ 경로당, 어린이집은 용적률 완화
	변경	• 주거 : 65,354.80㎡(59.28%) • 업무(오피스텔) : 10,742.62㎡(9.74%) • 업무(오피스) 및 상업 : 34,149.64㎡(30.98%) ※ 준공공임대(7.5%), 장기전세주택(2.5%)도입 : 오피스텔포함 주거비율 70%이하 ※ 용적률 797%이하 범위내에서 건축계획 가능 ※ 경로당, 어린이집은 용적률 완화
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	기정	○ 건립규모 - 전용면적 85㎡이하(일반분양) : 206세대 - 전용면적 60㎡이하(일반분양) : 293세대 - 전용면적 85㎡이하(임대주택) : 42세대(준공공임대+장기전세) - 전용면적 60㎡이하(임대주택) : 129세대(공공임대+준공공임대+장기전세) ○ 건설비율(세대수) - 일반분양 : 74.5%미만 - 임대주택 : 25.5%이상(준공공임대+장기전세주택 포함) ○ 건립예정세대수 : 670세대

- 변경사유서

구분	변경내용	변경사유
변경	• 구역면적 변경 17,484.4㎡ → 17,480.3㎡ (감 4.1㎡) • 용적률 변경 798% → 797% (감 1%)	• 소로2-4내 현황건축물 침범으로 인한 구역 제척으로 구역면적 감소 • 기반시설 면적 감소로 인한 용적률 감소

○ 건축계획(변경없음)

- 7)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(변경없음)
- 8) 정비사업 시행계획(변경없음)
- 9)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(해당사항 없음)
- 10)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(해당사항 없음)
- 11)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계획(변경없음)
- 12) 생태 면적률(관련규정에 따름)
- 13)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(변경없음)

나) 천호8재정비촉진구역(변경없음)

- 16. 존치지역의 관리 및 정비계획(변경없음)
- 17. 광고물 관리계획(변경없음)
- 18. 폐기물 처리에 관한 계획(변경없음)
- 19. 방재계획(변경없음)
- 20. 정보화계획(변경없음)
- 21. 에너지 순환계획(변경없음)
- 22. 특성화계획(변경없음)
- 23.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
 - 가) 재정비촉진지구 결정조서(변경없음)
 - 나) 용도지역 결정조서(변경없음)
 - 다) 용도지구 결정조서(변경없음)
 - 라) 도시계획시설 결정(변경)조서
 - 1) 도로(변경없음)
 - 2) 지하공공보도시설(변경없음)
 - 3) 공원(변경없음)
 - 4) 공공공지(변경없음)
 - 5) 사회복지시설(변경없음)
 - 6)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(변경없음)

마)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

- 1) 천호4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(변경)조서(변경)
 - (가)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(변경)

○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(변경)

구 분	도면 표시 번호	구역명	위 치	면적(㎡)			비 고
				기정	증감	변경	
변 경	-	천호4 재정비촉진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	천호동 410-10일대	17,484.4	감)4.1	17,480.3	-

- 변경사유서

구 분	변 경 내 용	변 경 사 유
변경	•천호4촉진구역 면적 변경 - 17,484.4㎡ → 17,480.3㎡ (감 4.1㎡)	•소로2-4 현황건축물 침범으로 인한 제척으로 구역면적 감소

(나)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(변경)

○ 용도지역 결정 조서(변경)

구 분	면적(㎡)			구성비(%)	비 고
	기정	증감	변경		
소 계	17,484.4	감) 4.1	17,480.3	100.0	-
일반상업지역	17,484.4	감) 4.1	17,480.3	100.0	-

- 변경사유서

구 분	변 경 내 용	변 경 사 유
변경	• 구역면적 변경 17,484.4㎡ → 17,480.3㎡ (감 4.1㎡)	•소로2-4 현황건축물 침범으로 인한 제척으로 구역면적 감소

○ 용도지구 결정 조서(해당없음)

(다) 기반시설에 관한 결정(변경)조서(변경없음)

○ 도로 결정조서(변경없음)

○ 사회복지시설(입체적 도시계획시설) 결정(변경)조서(변경없음)

(라)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(변경)조서(변경없음)

○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(변경없음)

○ 건축물 용도·건폐율·용적률·높이에 관한 결정(변경)조서(변경없음)

· 건축물 용도에 관한 결정조서(변경없음)

· 건폐율 계획(변경없음)

· 용적률 계획(변경없음)

- 용적률 완화사항(변경없음)
- 높이 계획(변경없음)
- 건축선에 관한 계획(변경없음)

(마) 경관계획(변경없음)

- 건축물 배치에 관한 계획(변경없음)
- 건축물 형태 및 외관 등에 관한 계획(변경없음)
- 경관에 관한 계획(변경없음)

(바)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(변경)조서(변경없음)

- 대지내 공지에 관한 결정조서(변경없음)
- 교통처리에 관한 결정조서(변경없음)

(사) 지구단위계획 운영지침(변경없음)

라. 기타사항은 「천호·성내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(변경)도서」에 따름

마. 관계도면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 참조 : 생략(비치한 도서와 같음)

※ 첨부된 도면 등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,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

바.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재정비촉진과(☎ 02-2133-7227) 및 강동구 도시계획과(☎ 02-3425-6053)에 관계도서를 각각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.

※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서울도시계획포털(<http://urban.seoul.go.kr>) 및 토지이음(www.eum.go.kr)에 게시할 예정입니다.













